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6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이연희

민형배 • 채현일 • 홍기원

서영석 · 조승래 · 이재관

황명선 · 복기왕 · 박 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

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 3호).

법률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고) ①・② (생 략)	제7조(신고)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3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	3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	
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률」, <u>「외국환거래법」</u> 및	<u>「외국환거래법」, 「형</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u>벌 등에 관한 법률」</u>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